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10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5. 3.

박 종 길 의원

# 제안 설명서

제안자 : 박 종 길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, 안 제2조에는 용어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

## 【박종길 의원 대표 발의】

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00925011 |
|----------|---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6.

발 의 자 : 박종길, 정순옥, 이영빈,  
김정희, 도하석, 남현주

### 1. 제안이유

-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다. 지원사업(안 제5조)
- 라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(안 제6조)
- 마. 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조, 제50조
  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
- 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디지털 리터러시(literacy)”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탐색·관리·이해·통합·소통·평가·창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, 인지적, 윤리적 능력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
3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4.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지원사업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

2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
3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
4.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6조(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3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.

**제7조(업무의 위탁)**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**지능정보화 기본법**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·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격차해소교육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4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**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**

제46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)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3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
4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·활용을 위한 교육
2.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·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
3.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

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.

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5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
6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